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, 헌법소원 제기

- 손보노조는 지난 7월 금융위가 최종 결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중인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90%로 제한하는 규제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힘.
 - 금융위의 실손보험 보장범위 축소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, 사회적 빈곤층의 의료서비스 혜택 축소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반서민·부당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견해임.
- 본 문제의 시발점은 지난 7월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실손보험 보장내용을 90%로 축소하면서 이 같은 자의적 판단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사적자치의 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에서 비롯된 것임.
 -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던 시장경제의 원칙과 규제철폐에도 반하는 반시장적, 반시대적 조치라는 설명임.
 - 또한 30년간 국민의 후생수준 향상에 이바지한 상대적 약자인 손보사의 기여는 무시하고 종국적으로 손해보험노동자들의 고용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견해임.
- 아울러 손보사들이 경고조치를 받았던 실손보험 절판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보장한도가 100%에서 90%로 축소된다고 알려지면서 손보상품의 절판 마케팅이 시작된 것이라며 갑작스런 규정 변경이 이 같은 혼란을 야기한 것이라는 설명임.
 -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손보업계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시급하며, 향후 생·손보사의 균형발전을 위한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함.
 - 반면,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실손보험의 보장한도 축소가 위헌판결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10월부터 판매가 시작된 부분은 오히려 보험산업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함.

(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10월 28일 헌법소원 제기,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 10/28)